

##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

-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신규 지정,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내용 변경 등 의결

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.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. 이와 더불어,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,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.

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 (세부내용 [\[참고\]](#))

### <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>

구 분	업체명	서비스명
신규지정 (15건)	네이버파이낸셜,뱅크샐러드, 비바리퍼블리카,에스케이플래닛, 엔에이치엔페이코,카카오페이, 쿠콘,핀다,핑크, 해빗팩토리,헥토데이터	보험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
	뱅크몰, 베스트핀, 비바리퍼블리카	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
	중소기업은행	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
지정내용 변경(1건)	네이버파이낸셜-하나은행	페이머니 통장 서비스
규제개선 요청(1건)	하나카드	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	책임자	팀 장	김보균 (02-2100-2841)
		담당자	사무관	한필윤 (02-2100-2859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암 (02-2100-2676) 김기훈 (02-2100-2953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권진웅 (02-2100-2945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권나림 (02-2100-2991)
<공동>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조문희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남진호 (02-2100-2523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	책임자	국 장	김부곤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조강훈 (02-3145-7140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은성 (02-3145-8030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문형진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김성환 (02-3145-7474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종오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문선기 (02-3145-7447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영로 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 장	김종환 (02-3145-5685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	책임자	실 장	이재석 (02-3145-7500)
		담당자	팀 장	류영호 (02-3145-7502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	책임자	실 장	송경용 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이영기 (02-3145-7180)

##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(15건)

### ①~⑪ 보험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

(네이버파이낸셜, 뱅크샐러드, 비바리퍼블리카, 에스케이플래닛, 엔에이치엔페이코, 카카오페이, 쿠팡, 핀다, 핀크, 해빗팩토리, 헥토데이터)

#### [ 서비스 주요내용 ]

-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·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.

#### [ 특례 내용 ]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, 제87조제1항 및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,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2조 제1항,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제5항 제3호

- 보험상품 비교·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나,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\*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됩니다.

\*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전자금융업자, 대출모집법인 등

- ⇒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- 또한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,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 [ 주요 부가조건 ]

- 동 서비스의 업무범위를 '보험상품을 비교·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'하는 행위로 설정하고,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(CM) 상품 중 단기보험(여행자·화재보험 등), 자동차보험, 실손보험, 저축성보험(연금제외), 펫보험, 신용보험으로 제한하였습니다.
- 또한,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(코스콤 등)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였으며, 비교·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·추천 목적 외에 활용·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하였으며,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.

## [ 기대 효과 ]

-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, 보험료 부담 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[ 향후 일정 ]

- '24년초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며,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,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·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여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공동업무협약(MOU)을 체결할 계획입니다.

## 12~14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

(뱅크몰, 베스트핀, 비바리퍼블리카)

## [ 서비스 주요내용 ]

-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, 소비자가 이를 비교·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·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입니다.

**[ 특례 내용 ]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,  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**

-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**[ 기대 효과 ]**

-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, 소비자가 상담 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[ 향후 일정 ]**

- '23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**15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중소기업은행)**

**[ 서비스 주요내용 ]**

-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, '실명확인증표의 사진'과 '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'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
**[ 특례 내용 ]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**

-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, 비대면 실명확인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른 5가지 방법\*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,

\*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(생체인증 등)

⇒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(영상통화를 대체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하였습니다.

### [ 기대 효과 ]

- 비대면 실명확인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, 기존 영상 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[ 향후 일정 ]

- '23년 3분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##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(1건)

### □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(네이버파이낸셜-하나은행)

#### [ 기존 지정내용 ] ('22.9.7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(고객명의)에 보관하고, 고객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 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.
- (특례내용)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등
  -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## [ 지정내용 변경 ]

-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은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 계좌수가 부가 조건 제한인 50만건에 다다름에 따라 계좌수 확대를 신청하였습니다.

- 동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예금규모 등에서 안정성 저해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제휴 계좌수 제한을 150만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.

###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(1건)

#### □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(하나카드)

#####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금융거래계좌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.
- (특례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
  - 직불카드(이하 '체크카드') 결제는 카드회원과 가맹점간 금융거래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,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 선불 전자지급수단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 하였습니다.

##### [ 규제개선 요청 ]

- 하나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,
  -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, 그간 운영결과, 금융시장·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\*하였습니다.

\*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 착수 예정이며,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(최대 1년6개월)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